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자 료</h1> <h2>6월 4일(목) 조간 (6.3. 12:00 이후 보도)</h2>	
		배 포 일	2020. 6. 3. / (총 5매)
과 장	정 영 기	전 화	044-202-2820
담 당 자	전 가 은		044-202-2822

## 일거양득, 금연도 하고 흡연과태료도 감면받고!

-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시 흡연 과태료 감면 시행(6.4.) -
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6월 4일(목)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이는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.
- 제도의 세부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### <감면 대상 및 기준>

-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.
  - ①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 :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
  - ②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: 과태료 면제
- 다만,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시 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,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.

### < 감면을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>

- 과태료 감면을 위한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이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	종류	이수기준
교육	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	3시간 이상 이수
	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실시(온라인)	
금연지원 서비스	보건소 금연클리닉	3개월 이상 등록 유지, 4회 이상 대면상담
	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	8~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
	전문치료형 금연캠프	캠프(5일)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하고, 2회 이상 대면상담
	금연상담전화(1544-9030)	100일 프로그램 이수

- 온라인 교육은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(<http://lms.khealth.or.kr>)에서 신청 및 이수할 수 있고,
- 금연지원서비스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하고, 금연상담전화는 1544-9030으로 전화 등록하며,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및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금연두드림 누리집(<https://nosmk.khealth.or.kr>)에서 제공기관을 확인\*할 수 있다.

\* 금연두드림 누리집 > 금연서비스 > ‘병원 금연치료’ 또는 ‘단기금연캠프’

### < 감면 신청 >

-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(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)를, 과태료를 부과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이 때 교육(감경) 또는 금연지원서비스(면제)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고,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.

-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시·도에서 수령하거나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(<http://lms.khealth.or.kr>)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, 신청서는 방문, 우편\*, F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.

\* 우편접수 등 신청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도착분에 한해 인정

### < 기타 사항 >

-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, 지체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또한, 교육 이수시 과태료를 감경받는 경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.
- 보건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“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지원 서비스 인지도·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### < 붙임 >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문

**특** **심**

**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문**

#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



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됩니다.

\*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('19.12.3.), 시행('20.6.4.)

##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

**50% 감면**  
금연교육 이수

### 온라인 금연교육

-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과태료 감면 교육 3차시 이수(총 3시간)  
주소 : <http://lms.khealth.or.kr>  
\* 모바일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

### 오프라인 금연교육

- 인근 보건소에서 3차시 이수(총 3시간)  
• 해당 기관에 교육 일정, 장소 등 문의

**100% 면제**  
금연지원서비스 참여 (4개 중 택1)

### 보건소 금연클리닉

- 3개월 이상 등록 유지, 4회 이상 대면상담  
• 인근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등록

### 전문치료형 금연캠프

- 캠프 수료 후 (5일) 3개월 이상 등록 유지,  
7회 이상 상담 (5일 캠프 중 5회, 캠프 종료 후 2회)  
•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금연캠프 제공기관안내  
참고 후 등록

### 병의원 금연치료

- 8~12주 과정 이수  
•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병의원 기관안내  
참고 후 등록

### 금연상담전화

- 100일 프로그램 이수(11회 이상 상담 진행)  
• 금연상담전화 1544-9030로 전화 등록



##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절차



1

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 
적발 보건소에 제출

과태료 부과 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원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(방문, 우편, Fax 등)

- ※ 우편 접수는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
- ※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 불가, 감면 프로그램 선택 후 신청내용 변경, 중복적용 불가
- ※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 자와 과태료를 체납중인 자는 적용 제외, 유예기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중단  
의견제출 기한 내 신청서 미 제출시 신청 불가

2

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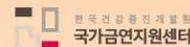
- ※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미 제출시 서비스 이수하여도 감면적용 불가 (서비스 신청서 먼저 제출 필수)
- ※ 금연교육 이수와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중 한가지만 선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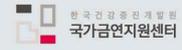
3

교육 또는 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감면신청서,  
이수확인서를 적발보건소에 제출

금연교육 신청서 제출 후 1개월,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 
감면신청서와 이수확인서를 적발 보건소에 제출 (방문, 우편, Fax 등)

- ※ 이수 후 각 이수 기관에 이수 확인서 요청





## ✓ 위반행위 적발

교육과 서비스 중 한가지 선택

### 교육



교육을 받으니까?  
서비스를 받으니까?

- 온라인 금연교육 센터
- 오프라인 금연교육



#### 적발 보건소 제출 ※ 의견제출 기한 내

-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작성, 제출

#### 교육 신청 기관 접속 또는 방문

- 금연교육신청

##### 교육 등록 방법

##### 온라인 금연교육

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및 신청  
주소 : <http://lms.khealth.or.kr>

##### 오프라인 금연교육

인근 보건소 등록(교육일정 등 문의 필요)

#### 교육 신청 기관 접속 또는 방문

- 금연 교육(3차시) 이수
- 감면신청서 출력(온라인) 또는 발급(오프라인)



#### 적발 보건소 방문

※ 교육 신청서 제출 1개월 이내

- 감면신청서 제출 (이수확인서 제출 불필요)

과태료 감면 (50%)

### 서비스



교육이랑 서비스 중에  
선택해주세요!

- 보건소 금연클리닉
- 전문치료형금연캠프
- 병·의원 금연치료
- 금연상담전화



#### 적발 보건소 제출 ※ 의견제출 기한 내

-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작성, 제출

#### 서비스 신청 기관 방문 또는 전화

- 금연지원서비스 등록

##### 서비스 등록 방법

보건소 금연클리닉  
인근 보건소 방문 등록

전문치료형금연캠프  
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 
금연캠프 제공기관 안내 참고

병의원 금연치료  
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 
병의원 기관안내 참고

금연상담전화  
1544-9030 전화등록

#### 서비스 신청 기관

- 각 금연서비스 이수 후 감면신청서, 이수확인서 발급

※ 금연치료 이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 
이수확인서 요청 필요

##### 이수 기준

보건소 금연클리닉  
3개월 이상 등록 유지, 4회 이상 대면상담

전문치료형금연캠프  
캠프 수료 후 3개월 이상 등록 유지,  
7회 이상 대면상담(5일 합숙캠프 중 5회, 캠프종료 후 2회)

병의원 금연치료  
8~12주 과정 이수

금연상담전화  
100일 프로그램 이수(11회 이상 상담 진행)

#### 적발 보건소 방문

※ 서비스 신청서 제출 6개월 이내

- 감면신청서, 이수확인서 제출

과태료 감면 (100%)